WTO 반덤핑협정상 동종상품 정의규정의 개정방안

이환규*

Ⅰ 서론
Ⅱ GATT 관련규정의 목적해석을 통한 분석
1 관련규정 분석
2 관련규정에 나타난 동종상품 개념
3 소결
Ⅲ GATT 제6조 입법과정에 나타난 동종상품 개념
Ⅳ 관련사례 분석
1 스웨덴의 반덤핑관세 사건
2 뉴질랜드의 핀란드산 전기변압기 수입 사건
3. EC의 부품수입규칙 사건
4 사례 분석
Ⅴ WTO 반덤핑협정상 동종상품 정의규정의 개정방안
1 GATT 제6조에서의 동종상품의 범위
2 WTO 반덤핑협정상 동종상품 정의규정의 문제점
3 WTO 반덤핑협정상 동종상품 정의규정의 개정방안

Ⅰ. 서론

GATT는 주로 상품무역과 관련된 협정이기 때문에 비슷한 상품을 확인하는 문제나 상품분류상의 문제가 흔히 제기되고 있으며, 상품과 관련된 해석문제에서 가장 많은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동종상품'[1]이란 용어이다. 즉, GATT에는 동종상품 관련 규정이 산재해 있지만,[2] 이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품과 관련

* 목포대학교 전임강사, 법학박사

1) '동종상품(like product)'이란 용어는 원래 프랑스어의 'un produit similaire'로부터 영역된 것이다. 'like product'란 용어는 우리말로 동종물품, 동종산품, 동종상품, 동종제품 등으로 번역되고 있고, 외교통상부 간행 조약집에서는 동종산품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GATT가 주로 상품무역과 관련된 협정임을 고려하여 '동종상품'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된 해석문제에서 가장 많은 분쟁의 소지를 안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우루과이라운드 결과 타결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이하 'WTO 반덤핑협정'이라 줄임) 제2조 제6항에서는 "동종상품이라 함은 조사대상인 상품과 동일한 상품, 즉 모든 면에서 비슷한 상품이거나 그러한 상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모든 면에서 비슷하지는 않지만 조사대상인 상품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가진 다른 상품을 의미한다."고 규정하여[3] GATT 제6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동종상품의 개념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고 있는 듯 보이나, WTO 반덤핑협정에서 내린 동종상품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동종상품 개념 자체를 다소 신축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여 반덤핑조치를 취할 여지를 확대시킴으로써 반덤핑조치가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으로 남용될 여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WTO 반덤핑협정에 의하면 덤핑수입사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동종상품을 생산하는 수입국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있거나 피해의 우려 또는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확립의 지연이 있는 경우 동종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의 청원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져 반덤핑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데, 동종상품 개념을 제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현재처럼 다소 신축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면 반덤핑조치를 청원할 수 있는 국내산업의 범위가 확대되어 우리나라처럼 무역의존도가 높은 개발도상국들이 그만큼 반덤핑조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WTO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도하라운드 개최 이후 WTO 반덤핑협정의 문제점에 대한 국내적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4] 본 연구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

2) GATT에서 직접 '동종상품(like product)'이라는 용어를 언급하고 있는 규정으로는 제1조 제1항, 제3조 제4항, 제6조 제1항, 제6조 제4항, 제9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6조 제4항 등이 있다

3) 반덤핑협정 제2조 6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roughout this Agreement the term 'like product'('produit similaire') shall be interpreted to mean a product which is identical, i.e. alike in all aspect to the product under consideration, or in the absence of such a product, another product which, although not alike in all respects, has characteristics closely resembling those of the product under consideration"

4) 배근성, "WTO 반덤핑협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1999, 이재형, "WTO 반덤핑협정상 덤핑판정에 관한 법적 쟁점의 연구", 「통상법률」, 제55호(2004), 10-37면, 이종화, "WTO 반덤핑협정의 개정방안과 협상전략 탐구",

WTO 반덤핑협정에서의 동종상품 정의규정의 재정립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그리고, 국외 논문을 살펴보더라도 이와 관련있는 논의는 한두편에 불과하다.[5] 그러나, 반덤핑협정에서 동종상품 개념의 재정립은 WTO 체제하에서 WTO 규범의 통제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실로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반덤핑협정에서 동종상품 개념을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 반덤핑협정을 근거로 취해질 수 있는 반덤핑조치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WTO 반덤핑협정에서의 동종상품 정의규정은 협정 타결 당시 선진국들의 입김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선진국들에 의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여지가 있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반덤핑협정상 동종상품 개념의 재정립에 관한 본 논의를 통해 도하라운드협상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협상 대표자들이 이를 반영하여 국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WTO 반덤핑협정에서의 동종상품 개념의 문제점을 고찰하기 위해 우선, 반덤핑협정에서의 동종상품에 대한 정의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이하 '보조금협정'이라 줄임)에서의 동종상품에 대한 정의가 동일하다는 것에 착안점을 두고자 한다.[6] 반덤핑협정과 보조금협정은 각각 GATT 제6조 및 제16조의 해석과 관련된 협정으로 제6조와 제16조에서는 모두 동종상품이란 용어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들 동종상품 관련규정의 목적해석을 통해 조문분석을 할 때 반덤핑협정과 보조금협정이 지금처럼 동일한 동종상품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동종상품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관련규정에서의 동종상품 개념을 조문의 목적을 고려하여 분석하여 WTO 반덤핑협정에서의 동종상품 개념 정의가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할 것이다.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GATT 제6조 입법과정을 통해 동종상품 개념을 분석할 것이고, 또한 반덤핑조문상 동종상품의 개념과 관련하여 채택되었던 패널보고서를 분석함으로써 반덤핑협정에서의 동종상품 개념 정의의 문제점을 뒷받침하고, 마지막으로 반덤핑협정에서의 동종상품 개념의 개정

「통상법률」, 제51호(2003), 181-216면; 이종화, 「WTO 반덤핑협정의 개정방향탐구」(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한국조세연구원 편, 「반덤핑제도의 운영현황과 제도적 개선방안」(한국조세연구원, 1998)

5) M Bronckers and N McNelis, "Rethinking the 'like product' Definition in WTO Antidumping Law," 33 *Journal of World Trade Law* 73 (June, 1999) 참조.

6) WTO 반덤핑협정 제2조 제6항 및 보조금협정 제15조 제1항 각주 46 참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Ⅱ. GATT 관련규정의 목적해석을 통한 분석

앞에서 언급했듯이, WTO 반덤핑협정과 보조금협정은 각각 GATT 제6조 및 제16조의 해석과 관련된 협정으로, GATT 제6조에서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16조에서는 보조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GATT 제6조와 제16조에서 동종상품에 대해 직접 언급하고 있는 규정은 제6조 제1항, 제6조 제4항, 제6조 제7항, 제16조 제4항이고, 이들 조문중 제6조 제7항에서는 동종상품이라는 용어로 'like product' 대신 'like commodity'를 사용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논의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상품'이라는 용어에 대해 'commodity'를 사용하고 있는 제6조 제7항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기로 한다.

본 Part에서는 동종상품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GATT 규정 제6조 제1항, 제6조 제4항 및 제16조 제4항의 조문분석을 통해 반덤핑협정과 보조금협정에서 동종상품에 대한 동일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1. 관련규정 분석

GATT 제6조 제1항은 "체약국은 일국의 상품을 정상적인 가격 이하로 타국이 상업에 도입하는 덤핑이 체약국 영역에 있어서 확립된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거나 또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또는 국내 산업의 확립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킬 때에는 이 덤핑이 비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본 조의 적용상 일국에서 타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의 가격이 다음의 어느 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동 상품은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국의 상업에 도입된 것으로 간주한다. (a) 수출국에서 소비되는 동종상품의 통상적인 상거래에서 비교 가능한 가격, 또는, (b) 전기한 국내 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ⅰ) 제3국에 수출되는 동종상품의 통상 상거래에 있어서 비교가능한 최고 가격, (ⅱ) 원산국에서의 상품의 생산비에 판매경비 및 이윤을 타당하게 가산한 금액·판매조건의 차이, 과세상의 차이 및 가격의 비교에 영향을 주는 기타의 차이에 대하여도 각각 타당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동종상품이 수출국 국내시장에서 소비될 때 판매되는 가격 이하로 수입품이 수입국 시장에서 판매되거나 동종상품의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판매가 없으면 동종상품이 제3국에 수출되는 가격 이하로 수입품

이 수입국 시장에서 판매될 때 불공정한 덤핑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덤핑의 정의에 대한 표현에 있어 가장 중심적인 부분은 동종상품의 개념이며, 덤핑이란 오직 '동종상품'의 가격비교를 통해서만 발현될 수 있다.[7]

GATT 제16조 제4항은 "또한 체약국은 1958년 1월 1일부터 또는 그 이후에는 가급적 조속한 시일로부터 일차상품 이외의 상품의 수출에 대하여 국내시장의 구매자가 부담하는 동종상품의 비교가능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당해 상품의 수출을 위하여 판매하게 되는 어떠한 형태의 보조금도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지급하는 것을 중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8] 국내시장에서 소비되기 위해 판매되어지는 가격 이하의 수출가격이 형성되는 '이중가격(bi-level pricing)'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비일차상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행위를 금지하고 있다.[9]

GATT 제6조 제4항은 국내시장에서 소비되기 위해 판매되는 동종상품이 부담하는 관세나 조세 면제에 의하거나 이러한 관세나 조세가 반환되어 낮은 수출가격이 형성되었다면 덤핑도 상계가능한 보조금 지급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10]GATT 제6조 제4항이 제16조 제4항과 직접 연관되는 것은 아니지만,[11] 상계관

---

7) John H Jackson(저)/한국무역협회(역), 「GATT해설」(한국무역협회, 1988), 183면.

8) GATT 제16조 제4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Further, as from 1 January 1958 or the earliest practicable date thereafter, contracting parties shall cease to grant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any form of subsidy on the export of any product other than a primary product which subsidy results in the sale of such product for export at a price lower than the comparable price charged for the like product to buyers in the domestic market Until 31 December 1957 no contracting party shall extend the scope of any such subsidization beyond that existing on 1 January 1955 by the introduction of new, or the extension of existing, subsidies

9) 보조금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로는 다음을 참조 법무부, 「UR협정의 법적 고찰(상)」(서울 창신사, 1994), 454-510면, 성재호, 「국제경제법」(서울 박영사, 2003), 170-201면, 이상윤, 「국제경제법」(서울 중앙경제사, 1996), 281-296면; 유재원, 「UR 총점검」(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 141-186면, 이장희 편, 「국제통상과 WTO법」(서울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6), 129-152면, 장효상, 「국제경제법」(서울 법영사, 1996), 305-311면;채욱, 「무역관련정책 및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2), 최승환, 「국제경제법」, 제2개정판 (법영사, 2001), 263-277면, 한국무역협회(역), 전게서, 145-173면, Jacques H J Bourgeois, *Subsidies and International Trade-European Lawyer's Perspective*(Klu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1991), John H. Jackson, William J Davey, Alan O Sykes, Jr, *Legal Problems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West Publishing Co, 1995), pp 757-814 , John H. Jackson, *The World Trading System · Law and Policy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The MIT Press, 1998), pp 279-304.

세조치를 관세나 조세의 면제 또는 반환으로 야기된 이중가격구조와 분리시켰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12]

GATT 제6조 제1항과 제16조 제4항은 상품의 수출가격과 동종상품의 수출국 국내소비가격을 비교함으로써 GATT 체약국이 수출품에 대하여 국내시장에서 소비되는 동종상품과 다른 가격구조를 설정하는 관행을 억제시켰다. 즉, 제6조 제1항과 제16조 제4항은 상품이 수출되지 않았을 경우에 형성되는 상품가격을 고려함으로써 수출가격이 수출국의 자연적 생산효율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가격으로 형성되도록 한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상품의 수출가격과 동종상품의 수출국 국내소비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수출국으로 하여금 국내시장가격에 기초한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하게 함으로써 수입국 국내시장에서 상이한 수출국으로부터 수입된 상품간의 경쟁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한다.

GATT 제6조 제4항은 제6조 제1항과 제16조 제4항이 취하는 접근법과 동일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GATT 제6조 제1항과 제16조 제4항은 수출국 국내가격에 비추어 수출가격을 왜곡시키는 어떠한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만,[13] 제6조 제4항은 국내소비를 위해 판매되는 동종상품에 정상적으로 부과되는 조세 또는 관세를 수출품에 대해 면제 또는 반환하는 수출국의 관행에 대해 수입국이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14] 이러한 조세 또는 관세를 면제해 주거나 반환해 주는 수출국의 관행은 수출가격은 정상적인 국내시장가격을 나타내어야 한다는 관념과 일치하지 않아 보일 수 있다 다시 말해, 상품에 대해 조세나 관

---

10) GATT 제6조 제4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No product of the territory of any contracting party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any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subject to anti-dumping or countervailing duty by reason of the exemption of such product from duties or taxes borne by the like product when destined for consumption in the country of origin or exportation, or by reason of the refund of such duties or taxes

11) GATT 제6조 제4항이 비일차상품에 대한 수출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제16조 제4항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6조 제4항은 일차상품에 대한 수출보조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16조 제3항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12) Rex J. Zedalis, "A Theory of the GATT Like Product Common Language Cases",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ol 27, 1994, p 827

13) GATT 제6조 제1항, 제16조 제4항 참조.

14) GATT 제6조 제4항 참조

세를 면제 또는 반환하는 것은 국내 판매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수출품이 판매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나, 제6조 제1항과 제16조 제4항에서 말하는 수출가격과 동종상품의 수출국 국내소비가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제6조 제4항이 제6조 제1항과 제16조 제4항에서 취하는 접근법과 동일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음이 명백해진다 GATT 1961년 보고서에 따르면 '정상가격'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수출가격'이란 당해 상품이 수입국에 반입되는 시점에서의 가격이 아니라 동종상품이 수출국을 떠나는 시점에서의 가격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수출가격은 수출을 위한 공장도가격(ex factory price)이 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FOB가격도 적절한 것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15] 그리고 1967년 반덤핑협정[16]은 수출가격이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되든 간에 이는 수출국에 있어서 이에 상응하는 국내가격과 비교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수출가격이 공장도가격으로 결정된다면 이에 비교되는 국내가격도 공장도가격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17] 또한 WTO 반덤핑협정 제2조 제4항에서는 "수출가격과 정상가격간에 공정한 비교를 한다. 이러한 비교는 동일한 거래단계, 일반적으로는 공장도단계 그리고 가능한 한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판매에 대하여 행하여진다."고 규정하여,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의 비교는 정상적인 공장도가격을 가능하면 같은 시기의 것을 비교하도록 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면, 실제로 중요한 상품가격은 수출국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질 때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 가격이 아니라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제시하는 가격이라 할 것이며, 사실상 모든 경우에 있어서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제시하는 가격이 일국 정부에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GATT 제6조 제4항은 제6조 제1항 및 제16조 제4항과 완전히 조화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제6조 제4항은 일정한 경우에 반덤핑조치나 상계관세조치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수출국들에게 동등한 대우를 하도록 하는 동종상품 관련규정을 보완한다. 따라서, GATT 제6조 제4항 역시 교역 상대국들간의 경쟁관계의 기초로써 국내시장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기 때문에 제6조 제1항 및 제16조 제4항과 같은 취지를 갖는다고 할 것

---

15) GATT, 1961 Report, para.7; GATT, 8th Supp BISD, 1960, p 146

16) 케네디라운드 결과 1967년에 GATT 제6조의 규정을 명료화하는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GATT)'이 체결되었는데, 이는 GATT와 별개의 문서로 제정되었고 이에 서명한 당사국에게만 적용되는 복수간 무역협정이었다.

17) 한국무역협회(역), 전게서, 184-185면

이다.

2 관련규정에 나타난 동종상품 개념

GATT 제6조 제1항 및 제16조 제4항과 제6조 제4항간의 상호 보충성은 동종상품 관련규정에서 나타나는 동종성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며, 이러한 점은 제6조 제1항과 제16조 제4항이 약간 상이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분명해진다 제6조 제1항과 제16조 제4항이 모두 상품의 수출가격이 국내시장가격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조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6조 제1항은 상품의 수출가격이 국내시장가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실히 판단하기 위해 동종상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그러한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때에는 인위적인 구성가격 방식도 채택하고 있다.[18]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제16조 제4항은 비일차상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동종상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을 뿐이지 제6조 제1항의 구성가격 방식과 같은 대체 방법을 제시하고 있질 않다.[19] 따라서,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수출된 상품과 '아주 동일한 상품(nearly identical products)'이 수출국 국내시장에서 전혀 판매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덤핑 판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비일차상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제16조 제4항에 있어서의 '동종의(like)'라는 용어는 제6조 제1항에 있어서의 '동종의'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고 할 수 없다.[20]

제6조 제1항과 제16조 제4항에서의 동종성 개념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은 비일차상품에 대한 수출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제16조 제4항의 취지를 확고히 해주는 이점이 있으며,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가격 방식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러한 점이 분명해진다.[21] 덤핑을 판정하는데 있어서 구성가격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에서, 다시 말해, '아주 동일한 상품(nearly identical products)'이 수출국 국내시장에서 전혀 판매되지 않았을 경우에 구성가격 방식을 사용하여 덤핑을 판정한다는 것에서 '동종성(likeness)' 개념이 '매우 유사한(very closely similar)'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을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보조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서의

---

18) GATT 제6조 제1항 (b)(ii) 참조

19) GATT 제16조 제4항 참조

20) Zedalis, *supra* note 12, p.828

21) *Ibid*, p.829

동종성 개념을 덤핑 관련 규정에서의 동종성 개념보다 다소 넓게 해석하지 않고 덤핑 관련 규정에서의 동종성 개념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해석한다면, 수출국 국내시장에서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가졌다고 판단하기에 조금 미흡한 상품의 판매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이러한 상품은 제16조 제4항에서 언급하는 동종상품의 범주에 속하지 않게 되어 수출가격과 비교하는 상품의 가격으로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품의 수출가격과 비교하는 국내시장가격은 이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반대로, 이러한 문제점을 피할 목적으로 제6조 제1항에 있어서의 '동종의'라는 용어를 제16조 제4항과 마찬가지로 다소 넓게 해석한다면, 덤핑을 판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구성가격 방식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22] 따라서, 비일차상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제16조 제4항에 있어서의 '동종의'라는 용어는 제6조 제1항에 있어서의 '동종의'라는 용어보다 다소 넓은 의미로 해석된다고 할 수 있다.

국내시장에서 소비되기 위해 판매되는 동종상품이 부담하는 관세나 조세 면제에 의하거나 이러한 관세나 조세가 반환되어 낮은 수출가격이 형성되었다면 덤핑도 상계가능한 보조금 지급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GATT 제6조 제4항에 대해서도 유사한 관점이 취해질 수 있다 수출국 입장에서는 수출품이 국내시장에서 판매되는 과세상품과 아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지 않으면 조세를 면제해 주거나 이미 징수한 조세를 반환해 줄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23] 관세 또는 조세를 면제해 주거나 반환해 주는 제도는 국내시장에서 판매되는 과세상품이 수출된다면 그러한 상품에는 조세 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6조 제4항에서의 동종성 개념은 제16조 제4항에서의 동종성 개념보다 엄격하게 해석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서 언급하는 예를 통해서도 입증된다.[24] 수출국이 특정 수출상품(예를 들어, 배)이 속하는 좀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그룹(예를 들어, 과일)에 포함되는 모든 상품의 국내 판매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반면, 국내시장에서는 전혀 판매되지 않고 수출되는 특정상품(예를 들어, 배)에 대해서는 관세나 조세를 면제해 주거나 반환해 준다고 가정해 보자. 이러한 시장 상황 하

---

22) *Ibid*

23) 여기서 말하는 조세란 간접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직접세는 수출보조금에 해당되므로 논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며, 간접세의 환급에 있어서도 과다환급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문제가 발생한다

24) Zedalis, *supra* note 12, p.829.

에서, 제6조 제4항에서의 동종성 개념이 '다른 상품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한다면, 수출국은 특정상품(예를 들면, 배)을 수출용으로만 판매하고, 교역상대국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 보지하고 있는 생산효율성을 약화시킬 의도로 '상이하지만 교체할 수 있는(dissimilar yet interchangeable) 상품'(예를 들면 사과)에 대한 세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불합리를 초래한다 따라서, 동종성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제6조 제4항의 기본 취지와도 모순을 피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GATT 제16조 제4항에서의 동종성 개념은 제6조 제1항과 제6조 제4항에서의 동종성 개념보다 다소 넓게 해석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제16조 제4항에서의 동종성 개념은 매우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상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25]또한, 제16조 제4항에서의 동종성 개념은 상이한 수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을 비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여타 GATT 동종상품 관련규정인 제1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9조 제1항 등이 취하는 해석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26] 특정 수출국으로부터 수입된 상품과 수출국 국내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비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제6조 제1항, 제6조 제4항, 제16조 제4항 등은 교역상품이 구현하는 자연적 생산효율성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제1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9조 제1항 등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제6조 제1항이 덤핑을 판정하기 위해 동종상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그러한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때에는 인위적인 구성가격 방식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은 수출품과 상당한 정도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존재할 때에만 국내시장가격 또는 제3국에 수출되는 가격이 사용된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것은 제6조 제1항에서의 동종성 개념에 다른 상품 대신 사용되어질 수 있거나 교체되어질 수 있는 상품이 포함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또한, 수출품에 대해 관세나 조세를 면제해 주거나 반환해 주는 제도는 제6조 제4항에서의 동종성 개념에 다른 상품 대신 사용되어질 수 있거나 교체되어질 수 있는 상품이 포함되지 않음을 더욱 분명히 해준다.

결론적으로, GATT 제6조 제1항과 제4항에서의 '동종성' 개념은 '동일한(identical)' 또는 '매우 유사한(very closely similar)'을 내포하는 의미로 사용되며,[27] 제16조 제4

25) *Ibid.*

26) 이환규, "GATT 최혜국대우원칙 관련규정에서의 동종성 개념 분석", 「국제법평론」, 제15호(2001), 81-85면

27) 이러한 결론을 확인하여 주는 패널 결정들은 다음과 같다 Swedish Antidumping Duties,

항에서의 동종성 개념은 '동일한(identical)' 또는 '매우 유사한(very closely similar)' 상품뿐만 아니라 '교체할 수 있는(interchangeable)' 상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그 의미가 확대된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GATT 제6조 제1항과 제4항에서의 동종상품 개념과 제16조 제4항에서의 동종상품 개념은 그 해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즉, 제16조 제4항에서의 동종상품 개념이 제6조 제1항 및 제4항에서의 동종상품 개념보다 광의로 해석된다 그러나 동 조문들의 목적해석을 통해 살펴본 바와는 달리 GATT 제6조 및 제16조의 해석과 관련된 협정인 반덤핑협정과 보조금협정에서는 동종상품에 대해 동일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즉, 반덤핑협정 제2조 제6항과 보조금협정 제15조 제1항 각주 46에서는 "동종상품이라 함은 조사대상인 상품과 동일한 상품, 즉 모든 면에서 비슷한 상품이거나 그러한 상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모든 면에서 비슷하지는 않지만 조사대상인 상품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가진 다른 상품을 의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규제근거, 규제대상, 입법배경,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덤핑과 보조금에 있어서의 동종상품 개념 정의에 동일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관련조문의 목적해석을 통해 살펴본 동종상품 해석과는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써 WTO 협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하나의 큰 문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GATT 제6조 입법과정과 관련사례에서 나타난 동종상품 개념을 분석하여 본 Part에서 논의한 GATT 제6조와 제16조에 있어서의 동종상품 개념의 차이를 뒷받침하고자 한다

Ⅲ. GATT 제6조 입법과정에 나타난 동종상품 개념

GATT 및 ITO 헌장작성을 위해 1946년부터 1948년 사이에 네 차례의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London 회의, New York 회의, Geneva 회의, Havana 회의가 그것이다.

Havana 회의에서 오스트렐리아 대표 Morton은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

BISD 3S/91(1955); New Zealand-Import of Electrical Transformers from Finland, BISD 32S/55(1986), European Community-Regulation on Imports of Parts and Components, BISD 37S/132(1991)

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GATT 제6조에서의 '동종상품(like product)'은 '정확히 동일한 상품(products that are exactly the same)'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28] 제6조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관념은 수입국과 수출국 산업간의 정상적인 경쟁관계를 왜곡시키는 불공정한 가격이익을 상쇄시키는 조치를 허용하자는 것이었다.[29]그러므로, 동종성 개념을 협의로 해석함으로써 이러한 목적은 훨씬 용이하게 달성될 수 있다 반면에, 동종성 개념에 '명백히 상이한 상품(distinctly dissimilar items)'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쟁관계를 왜곡시키는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GATT 협상사 초기 기록들은 제6조에서 동종성 개념이 협의로 해석된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은 1946년 London 회의에서 재기초한 ITO 헌장안을 제출하였는데, ITO 헌장안 제2조 제1항은 현재의 GATT 제6조가 다루고 있는 바에 대해 규정하고 있었다 London 회의 제2위원회 기술소위(Technical Subcommittee of Committee II)가 검토한 ITO 헌장안 제2조에서는 '동종상품(like product)' 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품(similar products)'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었다.[30]그러나, 반덤핑규정에 '동종상품' 뿐

---

28) 일반적인 국제통상정책에 대한 규정들을 검토하는 제3위원회 30차 회의에서 Morton은 Ceylon 대표 Corea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면서 이와 같이 주장하였다 Third Committee Commercial Policy, Summary Record of the Thirtieth Meeting, U N. Conference on Trade and Employment, 3d Comm, 30th mtg, U N Doc E/Conf 2/C 3/SR 30 at 5 (1948)

29) GATT 제6조는 1946년 미국의 「UN 국제무역기구를 위한 헌장안」 제11조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 U S Suggested Charter for an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Dep't of State Pub No 2598 (1946).이러한 ITO 헌장안과 관련하여, 1945년 미국이 제출한 「세계무역 및 고용 확대에 관한 제안」에서는, 반덤핑법은 교역국가들이 생산의 비교효율성(comparative efficiencies of production)에 따른 교역량을 확대시키기 위해 수락한 바와 일치하지 않는 조치를 피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였다 U S. Proposals for Expansion of World Trade and Employment, Dep't of State Pub No 2411, ch III(A)(3), at 9-12 (1945) 더욱이, UN 무역고용회의 준비위원회 첫 번째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몇가지 덤핑관행에 의해 정상적인 경쟁환경이 붕괴되는 것을 염려하였는데, 이러한 덤핑관행에는 가격덤핑, 서비스덤핑, 환덤핑 및 사회적덤핑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First Session of the Preparatory Committee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Employment, U.N Doc E/PC/T/C II/48 at 1 (1946), U N Doc. E/PC/T/C.II/54 at 11 (1946).결국, 입안자들은 반덤핑관세의 부과대상으로 가격덤핑만을 규제하기로 합의하였다 Report of the Drafting Committee of the Preparatory Committee, U N Conference on Trade and Employment, U.N Doc E/PC/T/34/Rev 1, U N Sales No 1947 11 3 at 13 (1947), Report of Conferenc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Employment, U N Doc E/Conf 2/C III/SR 30 at 6 (1948), and U N Doc ICITO/1/8 at 74 (1948)

만 아니라 '유사한 상품'도 포함시킨다면 수입국이 경쟁조건을 왜곡시키고 국내시장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오스트렐리아는 기술소위원회가 현재의 GATT 제6조에 해당하는 조문에서 '유사한'이라는 용어를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던 것이다.[31] 따라서, GATT 제6조에서 '유사한'이라는 용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의심할 바 없이 동종성 개념이 '다른 상품과 단순히 유사한 상품(goods that are only similar to others)'을 포함하지 않음을 나타낸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GATT 제6조 협상사는 동종성 개념이 협의로 해석되며, '동일한(identical)' 또는 '매우 유사한(very closely similar)'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고 할 수 있다

Ⅳ. 관련사례 분석

GATT/WTO 분쟁해결사례를 검토하여 보면, GATT 제6조상 동종상품의 해석과 관련된 패널 결정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중의 하나인 1985년 뉴질랜드의 핀란드산 전기변압기 수입 사건[32]에서, 패널은 수출국 국내시장가격 이하로 수입된 상품이 수입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material injury)를 야기시켰다는 주장에 대한 판정은 수입국의 독자적인 판단에 맡겨져야 하지만 그러한 판단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33] 그러나, 여타 덤핑 관련 사례에서 패널은 '실질적인 피해'와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만, 제6조 제1항, 제4항, 제7항에서의 동종상품에 대해서는 직접 논평하지는 않았다.[34]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패널 결정들은 동종성 개념에 대해 언

30) First Session of the Preparatory Committee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Employment, U N Doc E/PC/T/C II/48 (1946), Draft Report of the Technical Subcommittee of Committee II (Nov. 16, 1946), U.N Doc. E/PC/T/C.II/54 at 12 (1946)

31) Draft Report of the Technical Subcommittee of Committee II (Nov. 16, 1946), U N Doc E/PC/T/C II/54 at 13 (1946).

32) New Zealand-Import of Electrical Transformers from Finland, BISD 32S/55(1986)(이하 'New Zealand Imports'라고 함).

33) *Ibid*, para 4.4 참조

급하고 있고,[35] GATT 제6조를 검토하기 위해 소집된 전문가그룹이 제출한 보고서는 '동종의'라는 용어의 이해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주고 있다.[36]

아래에서는 GATT 제6조 관련 분쟁해결사례를 검토한 후, 동종성 개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스웨덴의 반덤핑관세 사건(1955)[37]

(1)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

스웨덴 정부는 1954년 5월 29일 나일론 스타킹 수입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도입하는 국왕명령을 발하였다 당해 명령에 의하면, 송장가격(invoice price)이 스웨덴 정부가 책정한 관련 최저가격보다 낮을 경우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덤핑사실이 입증되지 못할 경우 수입업자는 반덤핑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탈리아는 이러한 스웨덴의 국왕명령에 의한 이탈리아산 나일론 스타킹 수입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가 GATT 제6조에 위반된다고 GATT에 제소하였다. 그러나, GATT 체약국단이 이탈리아의 제소를 검토하기 전인 1954년 10월15일 신명령이 공포되었다. 신명령과 구명령 사이의 중요한 차이는 반덤핑관세를 평가함에 있어서 기초가격(basic price)이 더 이상 결정적인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 있었다. 그러나, 스웨덴 당국에 의해 결정되는 기초가격은 어떠한 탁송품의 가격이 이러한 기초가격보다 높은 경우 스웨덴 관세청이 반덤핑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하는 행정수단으로서 존속되었다. 또, 기초가격이 수입된 상품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기초가격과 관련하여 반덤핑관세를 평가한다 한편 이탈리아 정부는 스웨덴의 반덤핑 관련규칙이 개정되어 이제는 기초가격이 행정수단이 되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기초가격제도의 유지 그 자체가

---

34) Swedish Anti-Dumping Duties, BISD 3S/91(1955)(이하 'Swedish Anti-Dumping Duties'라고 함); European Community-Regulation on Imports of Parts and Components, BISD 37S/132(1991)(이하 'Regulation on Imports'라고 함)

35) Swedish Anti-Dumping Duties, *Ibid.*, paras 27-28, Regulation on Imports, *Ibid.*, paras. 3.88, 3.98, 4.7, 4.18-4.20, 4.29-4.30 참조

36)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GATT Doc L/978 (May 13, 1959), Report adopted, BISD 8S/145, 149.

37) Swedish Anti-Dumping Duties, *supra* note 32 동 사건에 대한 문헌으로는 다음을 참조 김성준, 전게서, 24-28면, 박노형, 「GATT의 분쟁해결사례연구」(서울 박영사, 1995), 88-99면

GATT 제6조 및 기타의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제도의 운영으로 인하여 실제 GATT에 의하여 이탈리아에 발생하는 이익을 사실상 침해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제소를 취하하지 아니하였다.[38]

(2) 패널의 평결 및 체약국단의 권고

패널은 기초가격제도는 본래적으로 최혜국대우규정 혹은 GATT 제6조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가격체제의 집행이 이러한 의무와 저촉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패널은 스웨덴 및 이탈리아의 정부에 대하여 세 가지의 공식적인 권고를 하였는데, 이는 패널 보고서와 함께 체약국단에 의해 채택되었다. 첫째, 스웨덴 정부가 반덤핑법의 집행에 있어서 지연 및 스웨덴에 대한 이탈리아산 나일론 스타킹의 수출에 대한 기타의 장애물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둘째, 스웨덴 당국이 이탈리아산 스타킹의 정상가격을 적절하게 결정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양국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을 명확하게 하려는 노력이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셋째, 두 당사국은 제10차 회의에서 체약국단 혹은 필요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받은 상설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패널의 결정은 당해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판정을 내려준 것은 아니었지만, 제소의 궁극적인 결과로서 스웨덴의 규칙이 1955년 7월에 폐기되었고, 체약국단은 제10차 회의에서 이탈리아의 제소가 만족할 만하게 해결되었다고 결론지었다.[39]

2. 뉴질랜드의 핀란드산 전기변압기 수입 사건(1985)[40]

(1)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

뉴질랜드 전력회사가 공고한 2대의 변압기 입찰에서 핀란드의 변압기 수출업자가 낙찰되었다. 이에 대하여 입찰에 참여하였던 뉴질랜드 업체가 핀란드 수출업자의 행위는 덤핑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 당국은 동 변압기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였다. 뉴질랜드는 정상

---

38) 법무부, 「UR 분쟁해결제도연구」 (서울 : 창신사, 1994), 311-312면

39)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동 사건에 대한 패널은 '동종상품'에 대해 직접 논평한 바가 없으며, 단지 '동종상품'이란 표현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40) New Zealand Imports, *supra* note 34 동 사건에 대한 국내문헌으로는 다음을 참조 박노형, 전게서, 449-455면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핀란드 내에 뉴질랜드에 납품한 형식과 동종의 변압기에 대한 국내가격이 없으므로 구성가격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핀란드 정부는 GATT에 뉴질랜드측의 반덤핑조치를 제소하였다

(2) 평결[41]

핀란드는 뉴질랜드가 구성가격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한 방법은 인정하되, 뉴질랜드가 구성가격을 높게 평가하였다고 항변하였다 패널은 뉴질랜드측이 핀란드로부터 적절한 자료를 받지 못한 가운데 별도의 출처로부터 가격요소들을 산출한 뉴질랜드측의 가격산정방법은 정당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덤핑행위가 뉴질랜드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나 피해의 위협을 가져왔는가의 결정에 있었다 피해를 주장한 뉴질랜드의 변압기 회사는 뉴질랜드 국내총생산의 92%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으로, 패널은 동 회사가 덤핑제소를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상태였음을 인정하였다. 다만 2대의 변압기수입이 실질적 피해가 되는지에 관한 검토에서, 패널은 해당변압기는 뉴질랜드의 국내생산과 총수입량의 1.5%에 불과하고, 수입량을 보면 2.4%에 불과한 미미한 수치라는 점을 이유로 뉴질랜드의 관련산업은 실질적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3. EC의 부품수입규칙 사건(1990)[42]

(1)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

1987년부터 1988년 사이에 EC 우회덤핑방지규정에 기하여 약 6건의 조사가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행하여졌다[43] 이에 대해 일본은 EC 이사회 규칙 No.1761/87[44] 및 이

---

41) New Zealand Imports, *Ibid*, paras. 4.1-4.11 참조

42) Regulation on Imports, *supra* note 34 동 사건에 대한 문헌으로는 다음을 참조 김성준, 전게서, 197-204면, 박노형, 전게서, 734-749면.

43) 이러한 사건들에서 조사 대상이 된 상품들은 전자타자기, 잔자저울, 수압천공기, 복사기, 볼 베어링 및 도트 프린터 등이었다

44) EC 이사회 규칙 No.1761/87은 제3국으로부터 덤핑되거나 보조금이 지급된 수입품으로부터 역내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이사회 규칙 No 2176/84를 개정한 것이며, 1988년 EEC는 이사회 규칙 No 1761/87을 이사회 규칙 No 2176/88로 대체하였다 이사회 규칙 No 2176/88 제13조 제10항에 따른 우회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내 생산자는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동종상품의 수출업자와 관련이 있을 것, 둘째,

에 근거하여 취하여진 조치들이 GATT 제6조와 합치하지 않으며, GATT 제1조, 제2조, 제3조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러한 규칙의 집행은 GATT 제10조에 위배되는데, 그 이유는 EC가 가격약속을 수락하는 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하였고 통일된 방법으로 부품의 원산지를 결정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EC의 규칙이 GATT 제20조 d호에 기하여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여 GATT에 제소하였다

(2) 평결

반덤핑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EC 역내에서 조립된 상품에 대한 EC의 조치는 내국민대우에 관한 제3조 제2항과 제4항에 위반되며, GATT 제20조 d호에 기하여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4. 사례 분석

앞에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덤핑과 관련된 사례들에 대한 패널 보고서를 검토하여 보면, 어느 것도 제6조 제1항, 제4항, 제7항에서의 동종상품에 대해서 직접 논평을 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동종성 개념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관련 사례에 대해 패널이 내린 평결을 살펴보면 동종성 개념에 대한 해석기준을 엿볼 수 있다.

우선, 1985년 뉴질랜드의 핀란드산 전기변압기 수입 사건에서 패널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뉴질랜드 전기변압기 산업이 당해 수입품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조사함에 있어, 패널은 이러한 전기변압기 산업에는 네 가지 서로 구분되는 범주의 변압기, 즉 1-5 MVA, 5-10 MVA, 10-20 MVA, 그리고 20 MVA 이상의 변압기가 있으며, 피해판정을 위해서는 이들을 분리해서 고려해야 한다는 뉴질랜드의 주장을 검토하였다. 패널은 뉴질랜드 변압기산업을 대표해 제소한 기업이 모든 종류의 변압기를 생산하고 있고, 그 대부분은 핀란드산 수입품에 의하여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뉴질랜드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를 취하였다. 그러므로, 패널의 견해로는 뉴질랜드 변압기산업의 전반적인 상태는 덤핑된 수입품에 의해 피해가 야기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기초를 제공해야만 한다고 본

공동체내 생산자는 덤핑방지절차가 개시된 후 그 생산을 개시하거나 실질적으로 생산을 증가시켰을 것, 셋째, 공동체내 생산작업에 사용된 부품이나 재료가 전 부품 재료가격의 최소한 50% 이상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은 수출국에서 기원한 것일 것 등이다.

다 그렇지 않다면 특정산업 또는 회사의 개별제조라인에 반덤핑관세를 통한 원조의 가능성을 허용하게 된다"[45]

이 사건에서 패널은 동종상품 개념이 너무 좁게 해석된다면 견실한 산업(healthy industry)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46]즉, GATT 제6조에서의 동종성 개념은 지나치게 좁게 해석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둘째, 1990년 EC의 부품수입규칙 사건에서 일본은 EC의 규칙이 GATT 제20조 d호에 기하여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여 GATT에 제소하였다 이에 대해 패널은 체약국이 GATT의 규정과 모순되지 않는 법률과 규칙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일반적 예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GATT 제20조 d호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47] 패널은 EC의 우회덤핑방지관세가 GATT 제20조 d호의 '법률과 규칙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의 범위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패널은 이러한 예외조항은 수입 완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는 데에만 적용되며, GATT의 규정과 모순되지 않는 법률과 규칙[48]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49]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GATT의 예외조항들은 좁게 해석되어져야 한다고 하였다.[50] 또한, 패널은 제6조에 따라 수입품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통관관세[51]를 부과하는 것은 관세양허표에 나타난 관세를 초과하여 통관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관념에 대한 예외[52]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GATT 제20조 d호가 수입국으로 하여금 자유로이 제6조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면, 제6조와 모순되지 않는 법률과 규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마다 GATT와 모순되는 모든 조치들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53] 그러

---

45) New Zealand Imports, *supra* note 34, para 4 6

46) Marco Bronkers and Natalie McNelis, *supra* nore 5, p 79

47) Regulation on Imports, *supra* note 34, paras 5 14-5 18.

48) 본 사건에서는 수입 완제품에 대한 EC의 반덤핑법을 의미한다

49) 본 사건에서는 우회덤핑방지관세를 의미한다

50) Regulation on Imports, *supra* note 34, para 5.17

51) 여기서 말하는 통관관세는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를 의미한다

52)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는 규정으로는 GATT 제12조와 제19조 등이 있다

나, 제6조를 발동하는 데에는 특정 요건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패널은 GATT 제20조 d호가 특정 요건이 규정된 예외조항인 제6조를 무효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석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결론지었다

1990년 EC의 부품수입규칙 사건에서 패널은 '동종상품'에 대해서 직접 논평을 하지도 않았고 GATT 제6조의 관점에서 EC의 조치를 고려하지도 않았지만, GATT 제20조 d호와 예외조항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제6조에서의 동종성 개념의 의미를 조명해 주었다. 패널은 제6조 및 기타 예외조항들은 매우 제한적이고 신중하게 해석되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분쟁당사국인 일본과 EC 뿐만 아니라 이해관련국인 홍콩과 싱가포르 등도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패널의 이러한 입장에 동조하였다.[54] 이러한 제6조에 대한 제한적인 해석방법은 제6조의 취지에 완전히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반덤핑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6조를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GATT 체제에서의 관세양허(tariff concessions)로 인해 생기는 무역수지(balance of trade)가 자연적 생산효율성에 반하는 반덤핑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표면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본 사건에서 분쟁당사국인 일본과 EC가 이러한 제6조의 목적을 용인하였다는 것은, '제6조의 보호무역주의와 GATT에 의한 전반적인 무역자유화로 인한 무역의 흐름간의 관계'에 대해 양당사국이 제출한 의견서에 의해 입증된다.[55] 이렇듯 반덤핑 규정이 엄격하게 해석된다는 것과 제6조의 주된 취지가 수입국에 의한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컨센서스는 제6조에서의 '동종성(likeness)' 개념이 '동일한(identical)' 또는 '매우 유사한(very closely similar)' 상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또한, 패널이 반덤핑관세 부과명령의 적용을 받는 동종상품의 정의를 확장하는 접근법[56]을 취한 EC 이사회 규칙이 GATT 제20조 d호에 기하여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은 동종성 개념에 대한 패널의 입장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 즉, 1990년 EC의 부품수입규칙 사건을 통해 나타난 제6조에서의 동종성 개념은 제한적으로

---

53) Zedalis, *supra* note 12, p.885

54) Regulation on Imports, *supra* note 34, paras. 3.57-3.58, 3.70, 4.14, 4.26.

55) *Ibid*, paras. 3.68, 3.73, 3.93, 3.99.

56) 즉, 동종상품의 수출이 확정 반덤핑관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생산자들과 관련된 혹은 연합된 당사자에 의하여 조립 혹은 생산이 수행되는 경우 공동체에서 조립되거나 생산된 후에 공동체의 상업권으로 도입된 상품에 대하여서도 확정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해석되어야 하며 지나치게 확장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GATT 제6조를 검토하기 위해 소집된 전문가그룹이 제출한 보고서는 '동종의'라는 용어의 이해와 관련된 몇가지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주고 있다. 즉, 전문가그룹 보고서는 GATT 제6조 제1항 a호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동종성 개념이 지나치게 좁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히기는 하였지만,[57] 제6조 제1항, 제4항, 제7항에서의 동종성 개념은 엄격하고 좁게 해석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58] 다시 말해, 전문가그룹 보고서는 "동종상품이란 물리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갖는 상품(a product which is identical in physical characteristics)으로 해석되어야 하나, 동 상품이 수입국시장의 특수한 조건에 적응하기 위해 일정한 변형이 가해진 경우에는 동종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하여 상당히 제한적인 견해를 보였다.

동종상품의 정의는 특히 관세분류표상의 상품분류와 관계된 문제이지만, 제6조에서의 동종상품 개념에 대한 최선의 해석지침은 반덤핑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GATT의 목적과 정책입장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59] 따라서, 동종상품의 의미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면[60] 이는 모든 상품을 보호하는 조치를 허용하게 되고 말 것이고, 만약 너무 좁은 의미로 해석된다면 약탈적인 가격차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이러한 점들은 앞에서 검토한 덤핑 관련 사례와 GATT 전문가그룹 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1985년 뉴질랜드의 핀란드산 전기변압기 수입사건에서 동종성 개념은 지나치게 좁게 해석되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으며, 1990년 EC의 부품수입규칙 사건에서 동종성 개념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지나치게 확장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또한, GATT 전문가그룹 보고서는 동종성 개념이 엄격하고 좁게 해석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즉, 덤핑 관련 사례와 GATT 전문가그룹 보고서는 일관되게 제6조에서의 동종성 개념이 좁

57)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GATT Doc L/978 (May 13, 1959), Report adopted, BISD 8th Supp 145, 149, para 13

58) *Ibid.*, paras 12-14

59) 한국무역협회(억), 전게서, 184면

60) 1973년 GATT 반덤핑위원회 5차 보고서에 의하면, 캐나다는 GATT 제6조 및 반덤핑협정의 '동종상품'을 해석하는데 있어, 비록 문제가 된 수입품의 상당부분이 수입국내에서는 생산되지는 않는다 해도, '동종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게 해석된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으며, 이러한 제6조에 대한 제한적인 해석방법이 제6조의 취지에 완전히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V. WTO 반덤핑협정상 동종상품 정의규정의 개정방안

1. GATT 제6조에서의 동종상품의 범위

지금까지 WTO 반덤핑협정에서의 동종상품 개념 정의가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규정의 목적해석을 통해 GATT 제6조에서의 동종상품 개념을 분석하였고, 제6조 입법과정과 관련사례 분석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였다.

즉, 제6조 제1항이 덤핑을 판정하기 위해 동종상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구성가격 방식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은 '동종성' 개념이 '매우 유사한(very closely similar)'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을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게 하여 주며, 비일차상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제16조 제4항에 있어서의 '동종의'라는 용어가 제6조 제1항에 있어서의 '동종의'라는 용어보다 다소 넓은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 또한, 수출품에 대해 관세나 조세를 면제해 주거나 반환해 주는 제도는 제6조 제4항에서의 동종성 개념에 다른 상품 대신 사용되어질 수 있거나 교체되어질 수 있는 상품이 포함되지 않음을 분명히 해준다.

그리고, GATT 제6조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오스트렐리아 대표 Morton이 제6조에서의 '동종상품'은 '정확히 동일한 상품(products that are exactly the same)'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고, 현재의 GATT 제6조가 다루고 있는 바에 대해 규정하고 있었던 ITO 헌장안 제2조에서 '동종상품' 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었지만, 반덤핑규정에 '동종상품' 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품'도 포함시킨다면 수입국이 경쟁조건을 왜곡시키고 국내시장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유사한'이라는 용어를 삭제되었다는 것 등을 통해 볼 때, GATT 제6조 협상사는 동종성 개념이 협의로 해석되며 '동일한(identical)' 또는 '매우 유사한(very closely similar)'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덤핑 관련 사례와 GATT 전문가그룹 보고서는 일관되게 제6조에서의 동종성 개념이 좁게 해석된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으며, 이러한 제6조에 대한 제한적인 해석방법이 제6조의 취지에 완전히 부합된다고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GATT 제6조 제1항과 제4항에서의 '동종성' 개념은 '동

일한(identical)' 또는 '매우 유사한(very closely similar)'을 내포하는 의미로 사용되며, 제16조 제4항에서의 동종성 개념이 '교체할 수 있는(interchangeable)' 상품까지 포함되는 개념인 것과는 달리 좁은 의미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다

2. WTO 반덤핑협정상 동종상품 정의규정의 문제점

논의한 바와 같이, GATT 제6조에서의 동종상품 개념이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인 WTO 반덤핑협정 제2조 제6항에서는 "동종상품이라 함은 조사대상인 상품과 동일한 상품, 즉 모든 면에서 비슷한 상품이거나 그러한 상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모든 면에서 비슷하지는 않지만 조사대상인 상품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가진 다른 상품을 의미한다."고 다소 신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얼핏 보았을 때는 '동일한(identical)'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비슷한(alike in all respects)'이라는 용어를 통해 동종상품 정의규정이 엄격하게 해석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매우 유사한 특성(characteristics closely resembling)'이라는 용어를 통해 동종상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완화시킴으로써 동종상품 정의규정이 신축적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겨두었다고 할 수 있다[61] 이는 패널과 전문가그룹의 입장과 배치되고 제6조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동종상품 정의규정에서 '매우 유사하다'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표현이고, '특성'이라는 것도 물리적, 화학적, 기술적 특성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62] 이러한 동종상품에 대한 추상적인 정의규정으로 인해 반덤핑조치가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으로 남용될 여지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동종상품 개념은 덤핑여부의 판단대상이 될 뿐 아니라 피해를 입은 국내산업의 범위 및 반덤핑관세 부과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동종상품의 범위를 축소하느냐 아니면 확대하느냐에 따라 반덤핑조치가 불공정무역관행을 시정하는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느냐 아니면 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는가가 결정된다. 미국은 동종상품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a)물리적 특성 및 용도, (b)유통경로, (c)상호 대체가능성, (d)소비자 및 생산자의 인식, (e) 공통의 제조시설 및 생산인력, (f)가격 등 여섯가지 기준을 고려하고 있고, EU는 (a)통상 사용된 원재료, (b)화학적 성분, (c)주요특성, (d)용도 등을 기준으

---

61) Marco Bronkers and Natalie McNelis, *supra* nore 5, p 351

62) 한국무역협회 편, 「반덤핑 바로알기」(한국무역협회, 2001), 45-46면

로 동종상품을 판단하는데, 다만, 미국과는 달리 비록 서로 경쟁관계나 상호 대체관계에 있더라도 서로 뚜렷이 구별될 수 있는 경우 동종상품으로 보지 않는다.[63] 그러나 실제로 미국이나 EU는 자국산업의 상황에 따라 동종상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포도주에 포도생산업체를 포함시킨다든지 농산물덤핑에 농업원료생산자도 포함시키는 것이 그 예이다.[64]따라서, 반덤핑협정이 동종상품에 대한 추상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WTO 회원국들이 동종상품 개념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을 하도록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반덤핑조치가 자국산업의 보호수단으로 오용할 여지를 마련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보조금 관련규정인 GATT 제16조에서의 동종상품 개념은 제6조에서의 동종상품 개념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데, WTO 보조금협정에서는 반덤핑협정과 동일한 동종상품 정의규정을 두고 있고, 이는 제6조와 제16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써, 이들 두 협정에서의 동종상품 개념에 대한 규정상, 해석상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WTO 반덤핑협정상 동종상품 정의규정의 개정방안

WTO 반덤핑협정상 동종상품 정의규정은 앞에서 검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우선, 반덤핑협정상 동종상품 정의규정을 "like product shall be interpreted to mean a product which is identical, i.e. alike in all aspect to the product under consideration(동종상품이라 함은 조사대상인 상품과 동일한 상품, 즉 모든 면에서 비슷한 상품을 의미한다)"로 개정하여 보조금협정상 동종상품 정의규정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반덤핑협정상 동종상품 개념이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둘째, 반덤핑협정상 동종상품 정의규정을 "like product shall be interpreted to mean a product which is identical, i.e. alike in all aspect to the product under consideration, or in the absence of such a product, another product which, although not alike in all respects, has characteristics very closely resembling those of the product under consideration."라고 개정하고, 추상적인 개념인 'characteristics'와 'resembling'에 대해서는 각주 등을 통해 개념을 명확히 하는 방안

63) 한국무역협회 편, 상게서, 46면

64) 한국무역협회 편, 상게서

이다.

셋째, 1959년 전문가그룹 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반덤핑협정상 동종상품 정의규정을 "like product shall be interpreted to mean a product which is identical in physical characteristics subject, however, to such variations in presentation which are due to the need to adapt the the product to special conditions in the market of the importing country.(동종상품이라 함은 물리적으로 동일한 특성을 갖는 상품으로 해석되어야 하나, 동 상품이 수입국시장의 특수한 조건에 적응하기 위해 일정한 변형이 가해진 경우에는 동종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개정하여 지금과 같이 '매우 유사한'이라든지 '특성'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신축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배제하는 방안이다

세 방안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조금협정에서의 동종상품 정의규정보다 제한적으로 해석되도록 하는 개정 방안으로, 이러한 개정을 통해서만 반덤핑협정에서의 동종상품 정의규정을 GATT 제6조의 취지에 부합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세가지 방안중 GATT 제6조가 다루고 있는 바에 대해 규정하고 있었던 ITO 헌장안 제2조에서 '동종상품' 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었지만, 반덤핑규정에 '동종상품' 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품'도 포함시킨다면 수입국이 경쟁조건을 왜곡시키고 국내시장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유사한'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였다는 GATT 입법사, GATT 제6조의 목적해석, 전문가그룹 보고서와 관련사례에서의 패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추상적인 정의규정으로 인한 해석상의 문제점 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방안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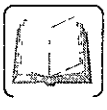

이환규

동종상품 WTO 반덤핑협정 GATT 제6조

[Abstract]

Study for Amending Definition Provision of "Like Product" in WTO Anti-Dumping Agreement

Lee, Hwan-Gyu

Like product is a central concept in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It appears in numerous provisions, and then defines to which product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GATT Agreement apply.Although it is a central concept, and has been around since the origins of GATT in 1947, the definition of like products is not settled.

As a result of Uruguay Round, WTO Anti-Dumping Agreement provides the following definition of "like product": Throughout this Agreement the term 'like product'('produit similaire') shall be interpreted to mean a product which is identical, i.e. alike in all aspect to the product under consideration, or in the absence of such a product, another product which, although not alike in all respects, has characteristics closely resembling those of the product under consideration.But this definition obviously leaves much room for interpretation.In other words, the definition makes like prduct interpreted somewhat flexibly.

This paper is aimed to prove that like product in WTO Anti-Dumping Law should be interpreted narrowly.And to get this goal, the definion should be amended as follows: First, like product shall be interpreted to mean a product which is identical, i.e. alike in all aspect to the product under consideration.Second, like product shall be interpreted to mean a product which is identical, i.e. alike in all aspect to the product under consideration, or in the absence of such a product, another product which, although not alike in all respects, has characteristics very closely resembling those of the

product under consideration.Third, like product shall be interpreted to mean a product which is identical in physical characteristics subject, however, to such variations in presentation which are due to the need to adapt the the product to special conditions in the market of the importing country.